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6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1. A

2. B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피고 2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솔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1.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851,864원 및 위 돈 중 10,765,158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1,978,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1,978,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보증기한을 2020. 7.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3. 주식회사 C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8. 주식회사 C에게 위 대출금의 잔여 원금 10,646,812원 및 이자 118,346원 합계 10,765,1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대위변제금 외에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권의 보전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배상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9%이고, 원고는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199,380원을 지출한 후 76,506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대위변제에 따른 추가보증료로 10,20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9. 2.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 26.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10,765,15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0,765,158원, 원고가 구상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76,506원, 추가보증료 10,200원 합계 10,851,864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10,765,1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10,851,864원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10,765,1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076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 제4,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4. 10.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 A은 2018. 10.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입을 반복해서 연체하였고 연체기간도 대부분 1개월 내지 3개월에 이르렀으며, 2019. 5. 17.부터의 원리금 납입을 하지 못하여 2019. 8. 22. 신용관리정보등록이 이루어지고 2019. 10.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 A은 2019. 8. 2.부터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대위변제를 한 2020. 2.

28.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앞서 본 대출금의 원리금 납입을 전혀 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의 원리금 납입을 반복해서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이 2019. 2. 10.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9. 8. 2.부터의 대출금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가 2020. 2. 28.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가액, 소극재산과 그 채무액이 아래 [표1], [표2]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 을 제5,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20. 9. 18.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2020. 9. 14.자 및 2021. 2. 5.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1. 8.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적극재산 중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해서는 일응 피고 B이 주장하는 가액을 기초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표1] 적극재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75,305,9001)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갑7-1,2,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2010년식)	7,600,000	갑13-1
3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2006년식)	3,590,000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75,305,9001)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따른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갑7-1,2,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4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2006년식)	4,300,000	
5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2007년식)	4,800,000	
6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66,000,000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을11
7	전주시 완산구 G건물 I호	7,500,000	
8	전주시 완산구 J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을16, 17
합계	289,095,900		

[표2] 소극재산

1	F은행 대출금	85,000,000	F은행에 대한 2020. 9.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F은행에 대한 2021. 2. 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F은행 대출금	54,000,000	
3	C 대출금	90,000,000	C에 대한 2021. 8.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4	C 대출금	12,996,000	
5	C 대출금	4,416,033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	24,685,8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20. 9. 18.자 사실조회결과
7	K 보증채무	5,390,000	갑14
8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을5
합계	326,487,864		

나) 원고는 앞서 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0,851,864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2021. 8. 3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구상금채무는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표2]의 순번 4번 기재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 B은 피고 A에게 2008. 12. 26. 30,000,000원, 2010. 11. 18. 30,000,000원, 2016. 1. 22.부터 2017. 10. 17.까지 4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10. 2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면서 위 대여금채권 중 60,000,000원을 포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 중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나머지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피고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채무초과 상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 가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다. 그러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F은행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종전에 A에게 지급하였던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한 것 외에 피고 A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돈은 없다.

③ 한편,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08. 12. 26. 및 2010. 11. 18. 각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1. 22.부터 2017. 10. 17.까지 합계 4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6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또는 위 49,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피고 A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면,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대여금채무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이고, 이는 사실상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것과 다르지 않다.

④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는바, 피고 A이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 B이 다른 일반 채권자에 앞서 피고 A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먼저 이행하기 위해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피고 B은 피고 A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적극재산 가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매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 때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2020. 9. 1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02,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F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2. 11.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175,427,700원²⁾ 이고, 위 근저당권이 해지될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5,176,54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추인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10,851,864원의 구상금 및 위 돈 중 대위변제금 10,765,158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인 90,251,157원(= 175,427,700원 - 85,176,54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11,978,978원[= 10,851,864원 + 10,765,158원에 대한 2020. 2. 28.부터 2020. 3. 16.까지의 지연손해금 47,649원(= 10,765,158원 × 0.09 × 18/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0,765,158원에 대한 2020. 3. 17.부터 2021.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1,079,465원(= 10,765,158원 × 0.12 × 305/365)]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위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1,978,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978,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문

별지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2020. 12. 11.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473,700원에서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